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6. 27.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3년 5월 4일
- 나. 발 의 자: 차인영 의원 외 1명
- 다. 회부일자: 2023년 5월 11일
- 라. 상정일자: 제244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2023.5. 15.) 상정
제245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1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2023. 6. 20.) 재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국장 강현숙)

가. 제안이유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장례비지원 등 수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적용대상(안 제3조)
- 책무 및 예우(안 제4조 ~ 제5조)
-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안 제6조)
- 복지지원 등(안 제9조)
- 보훈예우수당 지급(안 제10조)
-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11조)
- 예산지원(안 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정진)

○ 본 개정조례안은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장례비지원 등 수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우리 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에서는 조례 적용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추가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공훈선양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11조에서는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거주기간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

○ 검토 결과

-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적용 대상자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추가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예우 및 지원하고자 하였고,
-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를 “유공자 본인”에서 조례안 “제3조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함으로써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각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에 따라 유족 또는 가족까지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공훈선양사업으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지원을 강화하여 국가보훈대상자분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적정하게 규정되어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인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2
----------	-----

발의연월 2023. 5. .

일: 발의자: 차인영, 박현우 의원(2인)

찬성자: 유승용, 이성수, 이순우
의원(3인)

1. 제안이유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보훈예우수당과 사망위로금의 수혜 대상자 요건을 완화하고 장례비 지원이라는 신규 수당을 신설하여 관내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지원을 강화,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공로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적용대상(안 제3조)
- 나. 책무 및 예우(안 제4조 ~ 제5조)
- 다. 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안 제6조)
- 라. 복지지원 등(안 제9조)
- 마. 보훈예우수당 지급(안 제10조)
- 바. 사망위로금 지급(안 제11조)
- 사. 예산지원(안 제12조)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3. 5. 4. ~ 5. 8.)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등포구(이하“구””를 “영등포구(이하 “구””로, “단체 또는 사람으”를 “사람 또는 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6호 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제4조제1항 중 “구는”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조성하는데”를 “조성하기 위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민”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으로 한다.

제5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국가보훈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6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제9조제1호 중 “등에 대한”을 “등의 사용료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탁시”를 “위탁 시”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을 “(보훈예우수당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제6호에 해당하는 유공자 본인”을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사망위로금(이하“위로금””을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을 “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위로금은 유가족이”를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으로, “보훈대상자”를 “국가보훈대상자”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중전의 제13조)의 제목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을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u>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u>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단체 또는 사람</u>으로 한다.</p> <p>1.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및 「<u>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u>단체 또는 회원</u></p> <p>2.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u>단체 또는 회원</u></p> <p>3.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의 적용을 받는 <u>단체 또는 회원</u></p> <p>4.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의 적</p>	<p>제 3 조 (적 용 대 상)</p> <p>-----</p> <p>----- <u>영등포구(이하 “</u></p> <p><u>구</u></p> <p>” -----</p> <p>-----</p> <p>----- <u>사람 또는 단체</u></p> <p>-----.</p> <p>1. 「<u>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u>」 및 「<u>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에서 <u>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u></p> <p>2. 「<u>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u>」에서 <u>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u></p> <p>3. 「<u>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에서 <u>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u></p> <p>4. 「<u>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u>」에서</p>

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신 설>

7. (생략)

제4조(책무) ① 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

8. (현행 제7호와 같음)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 조성하기 위해 -----.

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

제5조(예우) 구청장

국 가 보 훈 대 상 자

대상에게는 의전상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 4. (생략)

<신 설>

제9조(복지지원 등)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1.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원·체육시설·주차장·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료 감면

- 2. (생략)

- 3. 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매점가판대, 구두수선대, 교통카드판매대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나 운영의 허가, 위탁시 우대

제10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

-.

제6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

-----.

- 1. ~ 4. (현행과 같음)
- 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비 지원

제9조(복지지원 등) -----

-----.

- 1. -----
----- 등의
사용료 및 ----

- 2. (현행과 같음)

- 3. -----

----- 위탁시 ----

제10조(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 제7호

서조항과 같다. 다만, 제1항 및 다른 조례에 따라 희생·공헌자 위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위로금은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생략)

<신설>

제12조 (생략)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
---- 국가보훈대상자 -----
----- . -----
----- .

④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2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4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

관계 ----- 기관

제14조 (생략)

-----.
제15조 (현행 제14조와 같음)